국가기간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383

발의연월일: 2024. 8. 29.

발 의 자:김정호·어기구·정성호

박 정 • 윤후덕 • 김남희

박희승 · 서왕진 · 허종식

최기상 • 진성준 • 전재수

박정현 • 이연희 • 차지호

이수진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전력망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지만, 증가하는 발전설비의 양을 수용할 전력망이 부족하여 보급에 차질을 빚고 있음.

전력을 적기에 공급하는 것은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고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필수 요소이며, 특히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체계 및 전력망을 구축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사안임.

그러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1979년 한국전력공사에 전력망 구축을 부과한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이 제정된 이후 2003 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개정되는 등 수 차례 관계 법령이 개정됐 지만, 원전·화전 중심의 중앙집중형에너지체계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에너지체계로 급변하는 과정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음. 특히 한국전력공사 중심으로 전력설비를 확충하는 체계는 증가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적시에 활용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 이에 국가가 주도하여 전력망을 확충하고, 주민수용성을 제고하는 등 신속한 전력망 확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임.

이를 위해 국가전력망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전력망 개발사업을 주도하게 하고,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 토지보상, 주민지원 사업절차를 개선하여 산업계 및 상업시설, 일반 가정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특히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로 전환하여 우리나라 탄소중립을 이끌고 미래형에너지체계로의 조기 전환을 유도하고자 함.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하여 탄소중립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송·변전설비"란 송전탑, 송전선로, 변전소 등 송전(送電) 및 변전(變電)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2. "국가기간전력망 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5조제6항제3호에 따른 주요 송전·변전설비계획에 포함된 34만 5천볼트 이상인 송·변전설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중 이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받은 설비를 말한다.
 -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변전설비
 - 나.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자력을 사용하여 생산 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변전설비

- 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변전설비
- 3. "국가기간전력망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국가 기간전력망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과 이와 관련한 시설의 조성 등 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사업시행자) 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가 시행한다.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간전력망 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국가기간전력망 설비의 기술확보 및 전력망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가기간전력망 설비의 확충과 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전원개발촉진법」을 따른다.

제2장 국가전력망위원회 등

- 제6조(국가전력망위원회 설치) ① 국가기간전력망 설비 확충 및 소규 모 전력망 연계와 관련된 주요 정책과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전력망위원 회(이하 "전력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제9조에 따른 국가전력망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기간전력망 설비의 지정에 관한 사항
 - 3. 국가기간전력망 설비 입지선정, 개발사업 등 전력망 확충과 관련 된 의견, 갈등·분쟁 중 전력망위원회가 조정 및 중재가 필요하다 고 인정한 사항
 - 4.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변경에 관한 사항
 - 5. 제14조제3항에 따른 공동개발 등에 관한 사항
 - 6. 제18조에 따른 사업에 딸린 사업의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에 관한 사항
 - 7. 제19조에 따른 규제개선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
 - 8. 국가기간전력망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배전 및 송전용 전력망 과의 연계 계획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전력망위원회 위원장이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전력망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
 - ② 전력망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기간전력망 설비를 지정

- 할 경우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전환 이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된 사항 중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된 사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는 제외)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고시 또는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전력망위원회 구성·운영) ① 전력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 1. 당연직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장 등
 - 2. 위촉위원: 에너지·자원, 환경·해양환경, 산림, 수산업, 국토이용, 과학·기술, 갈등조정, 전력설비 개발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 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 ② 전력망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이 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전력망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망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국가전력망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산업 통상자원부차관이 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력망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국가기간전력망 실무추진단의 구성·운영) ① 전력망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력망위원회에 국가기간전 력망 실무추진단(이하 "실무추진단")을 둘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망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무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가전력망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 제9조(국가전력망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 의 안정을 위하여 국가전력망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전력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

- 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전력망 확충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전력망 확충의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 3.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사항
- 4. 직전 기본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 5. 국가기간전력망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배전·송전용 전력망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전력수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⑦ 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기 위 해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에 따라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의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
-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 및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⑨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기초조사의 실시) ① 사업시행자는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해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에 따라 선정된 입지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나 측량을 하려는 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국가기간전력망 설비의 개요
 - 2. 국가기간전력망 설비 개발사업구역(이하 "개발사업구역"이라 한다)의 위치 및 면적
 -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4. 개발사업의 소요 자금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 5. 국가기간전력망 설비와 관련한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 6.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 7. 제9조제7항에 따른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개발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 2.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협의에 필요한 서 류
- 3. 제13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인허가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 4.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의 피해보상에 관한 서류
-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물건 또는 권리, 어업권, 양식업권(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보상이나 매수계획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6. 그 밖에 개발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전력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실시 계획 중 변경승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력망위원회의 심의를 거 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의견요청 또는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협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협의에 관한 의견을 말한다)을회신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듣거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⑥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 2.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 3.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실시계획의 수립, 신청 및 승인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실시계획의 공고·열람 및 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사업시행자 는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실시계획을 공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를 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열람기간 내에 설명회를 통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주민등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
- 2. 국방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 실시계획의 사업면적 또는 선로의 길이가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주민등의 의견청취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신고·지정 또는 결정·면허·협의·동의·해제·심의·등록·처분 등(이하"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1조제7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에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2.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 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 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 7.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 수도 설치의 인가

- 8.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 9.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
-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 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 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 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 1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의 허가
- 13.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 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1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 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 1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 16.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 1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
- 19.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 20.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 21.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 22.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 23. 「습지보전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승인
- 24.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 치·관리의 허가 또는 신고
- 25.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발행위를 위한 사전협의
- 2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 2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 2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 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등
- 29.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 30.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 3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3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33.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 3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 축허가 등의 동의
- ②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신청할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장 개발사업 인허가 특례 등

- 제14조(국가기간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 ① 「전원개발 촉진법」 제5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입지선정위원 회의 운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국가기간전력망 설비의 일부 또는 전체가 지하 또는 물밑에 설

치되어 경관을 저해하거나, 갈등·분쟁 발생 등의 우려가 적을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에도 불구하고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생략할 수 있다.

- ③ 사업시행자는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입지선정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의 개발사업과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할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시설의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 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29 조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에 대하여 평가서의 협의를 요청받은 행 정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에게 평가협의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이내 에 통보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 또는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1회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협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③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을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 2회 이하로 조사할 수 있다.
- 제17조(「자연재해대책법」의 적용 특례) ① 「자연재해대책법」 제4 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은 재해영향평가 협의만을 실시한다.
 - ②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20일 이내에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이내에 통보가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의 보완·조정 요청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다만,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이

- 아니거나 협의시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의 재해영향평가의 협의에 관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다.
- 제18조(딸린 사업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제 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이후 건축물, 진입로, 임시작업장 등의 딸린 사업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신고·지정 또는 결정·면허·협의·동의·해제·심의·등록·처분 등 (이하 이 조에서 "딸린 사업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지연되어 개발사업의 적기 확충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딸린 사업 인·허가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 1.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4호까지의 인ㆍ허가
 -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4. 그 밖에 딸린 사업의 설치 또는 개량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력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딸린 사업 인·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권자"라 한다)에게 딸린 사업인·허가등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인·허가

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딸린 사업 인· 허가 등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인·허가권자는 딸린 사업 인·허가등의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 ④ 인·허가권자가 제3항의 회신기간 내에 딸린 사업 인·허가등의 처리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에 인·허가등의 처리가 승인된 것으로 본다
- ⑤ 그 밖에 딸린 사업 인·허가등의 신속처리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이 조에서 "규제개선"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사업시

행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 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 할 수 있다.

- ④ 전력망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법령의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한 답변 또는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제5항에 따른 관련 법령의 정비 추진계획을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와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심사기

준,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지원·보상에 관한 특례

- 제20조(토지등의 사용 및 보상에 관한 특례) 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가 성립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에게 그에 따른 보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 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전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매수청구권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②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를 협의에 의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에게 그에 따른 보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금전을 토지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 또는 분할지급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③ 지상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하기 위해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 ④ 지원 및 보상에 관한 기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주택소유자, 토지소유자 및 주변지역 지역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2조(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참여 지원)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등의 소유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이하 "재생에너지"라 한다) 발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수 있다.
 - 1.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는 방식
 - 2.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식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재생에너지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재생에너지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원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재생에너지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토지등의 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 포함된 토지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1. 지방자치단체
 - 2.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법」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업무범위,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가공전선로 인근 주민의 재정적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사업시 행자는 국가기간전력망 설비가 지상 공간에 설치되는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사업
 - 2.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 3. 그 밖에 국가기간전력망 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의 에너지 복지 증 진 및 지역개발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지역, 지원비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는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1. 제4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간전력망 설비의 기술확보와 전력망 확 충을 위한 재정적 지원
 - 2. 제21조에 따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한 지원
 - 3. 제22조에 따른 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참여 지원
 - 4. 제24조에 따른 에너지 복지의 재정적 지원 등
 - 5. 그 밖에 개발사업을 위하여 전력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사항

제6장 보칙 등

- 제26조(정보공개) ① 사업시행자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정보를 개발사업구역의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27조(권리·의무의 승계) 개발사업구역의 토지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정조치는 그 승계인에 대하 여도 효력이 있다.
-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
- 2. 제7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제30조(과태료) 제10조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한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전 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에 따라 입지선정을 진행중인 사업이 이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국가기간전력망 설비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는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본다. 제3조(딸린 사업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에 관한 적용례) 이 법시행 당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이 이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기간전력망 설비로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라 딸린 사업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본다.